

하천 수난사고 예방에 손 놓은 광주시

영산강·황룡강 등 200km 구간 구명조끼·튜브 고작 19개 도심 하천 안전시설 태부족 ...인명사고 잇따라 대책 시급

최근 무등산 자락에 있는 광주시 북구 석곡천에서 같은 초등학교 형, 누나 10여 명과 물놀이를 하던 박모(8·초등학교 1학년)군이 2m 깊이 물웅덩이에 빠졌다. 해당 하천은 평소 수심이 깊은 곳도 어린이의 배꼽 정도인 50~70cm 안팎이었지만, 장마 이후 하천 일부에 2m 가까이 되는 물웅덩이가 생기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이다.

박군은 5학년 몇몇이 손에 손을 잡는 '인간사슬'로 겨우 구해냈으나, 너무 많은 물을 들이킨데다 폐에 물까지 차 인근 대학 병원 응급실에서 겨우 생명을 건진 뒤 일주일 넘게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석곡천 인근 마을 주민들은 "일부 하천의 경우 수심이 2m가 넘는 곳이 있는데도, 그 흔한 구명튜브조차 배치돼 있지 않다"면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는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지만, 언제 사고가 날지 불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살인적인 폭염을 피해 광주도심 하천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이 늘면서 수난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하천을 관리하는 광주시의 안전대책 마련이 소극적이어서 시민들이 물놀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광주시는 민선 7기들어 폭염에 대비한 '긴급 폭염안전대책본부'까지 가동한다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정작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하천 수난사고 예방 대책은 제외해 '반쪽짜리 폭염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광주지역 도심 하천에선 매년 수난사고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데도 광주시는 수심 등 기본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기본 안전장비인 구명조끼·튜브 등을 놓아두는 구명함마저도 200km가 넘는 광주지역 하천 구간에 겨우 19개만 설치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하천은 영산강·황룡강·지석천 등 국가하천 3곳,

광주천·중심사천·풍영정천 등 지방하천 33곳으로, 전체 길이는 210km에 달한다. 이 중 광주시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장은 지난 2013년 조성한 동구 용산동 동산타워 앞과 광산구 임곡교 인근 등 2곳이다.

문제는 공식 물놀이장 이외 하천은 안전요원 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기본적인 구명함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광주지역 하천에 설치된 구명함은 모두 19개로, 동구 1개(선교저수지), 서구 2개(풍암저수지), 남구 9개(송촌보 등), 북구 4개(철단대교 인근·충효동 생태공원 등), 광산구 3개(임곡교·송산유원지 인근 등) 등이다. 전체 하천 길이로 따져봤을 때 11km마다 1개씩 설치된 꼴이다.

또 구명함만 설치된 장소를 안내하는 표식이나 팻말도 부족해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명함을 활용한 경우도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치기 피서지로 인기가 높은 원호계곡은 인근 정풍쉼터 다리 위에 1개 뿐이다. 광산구 송산천, 임동 인근 광주천 광운교 밑, 무등산 자락 석곡천 등도 시민들이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즐겨찾는 곳이지만 구명함 설치는 전무했다.

광주시가 하천 수난사고 예방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해마다 하천내 수난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동구 소태동 인근 광주천에서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천변을 산책하던 지체장애인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 발생했으며, 지난 2015년 8월에도 북구 임동 인근 광주천 광운교 아래에서 피서객 3명이 불어난 하천에 고립됐다가 구조기도 했다. 2014년에는 광운교 밑에서 잠을 자던 노숙자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고, 2008년에는 기습 폭우로 장애인 급류에 휘말려 광주천 집수구에 빠



소외계층에 전달할 선공기 대한적십자 광주·전남지사 직원들이 30일 오전 광주지역 소외계층들에게 전달할 선공기, 여름이불 등의 구호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져 숨진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하천 수난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광주시는 하천 수심과 구명함 위치, 사고우려 지역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재난예방과 관계자는 "매년 초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는 지역을 조사하고

있지만 공식 물놀이장 2곳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구명함은 각 차구와 소방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은 알지 못하며 각 하천별 수심도 모른다"고 답변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시험지 유출 행정실장·학부모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경찰 대가성 여부 수사

광주 한 사립고교의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학교 행정실장과 학부모 모가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은 "고3 시험문제를 빼들려 학사행정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광주 한 사립고교 행정실장 A(57)씨와 학부모(학운위원장) B(여·51)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30일 밝혔다. 애초 경찰은 지난 26일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고3 수험생인 B씨 아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을 공모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시험지 유출 사건은 지난 11일 서술형까지 똑같이 나온 예상문제를 본 일부 학생들이 '시험문제 유출의 의심된다'며 학교측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30분께 학교 등사실(인쇄실)에 들어가 이과 기말고사 시험지(9과목) 원본을 들고 빠져나

와 행정실에서 복사한 뒤 1시간여 뒤 남구 노대동 거리에서 학부모 B씨를 만나 시험지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원본은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뒀다.

B씨는 유출된 시험지 복사본을 직접 편집한 뒤 아들에게 '과거 학교에서 출제된 시험 족보'라고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일부 과목 시험지는 건넸으나 금전거래 등 대가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B씨도 "금품 등을 건넨 적은 없으며, 단지 아들을 의대에 진학시키기 위해 부탁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앞서 학부모 B씨가 운영하는 병원과 집, 행정실장 A씨의 집, 시험지가 유출된 학교 등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의문을 낳고 있는 관련자들의 시험지 유출 동기와 대가성 여부 등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아들을 의대에 보내려던 학부모와는 달리 행정실장의 병행동기가 뚜렷하지 않음에 따라 시험지 유출에 따른 대가 지급, 내부 추가 개입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장애인 전기 파리채로 충격 사회복지사 실형

전주지법, 징역 7개월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폭바라 앉아있지 않는다며 지적장애인을 전기 파리채로 충격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5)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전북 내 한 사회복지시설 생활관에서 1급 지적장애인 B(37)에게 "폭바라앉아있으라"면서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B씨의 팔과 어깨 등을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

해 불리한 진술을 한 동료 교사에게 "죽자고 덤비는 놈은 죽자고 죽여줄 거다"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로서 자신이 맡은 장애인들을 성실히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을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동료 직원을 협박까지 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헌재 "법원 앞 집회 모두 불허는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법 개정해야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를 표시하려는 집회·시위를 법원 인근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05년 11월과 2009년 12월 연거푸 법원 인근의 집회·시위 금지가 합헌이라

고 판단한 헌재가 3번째 헌법재판에서는 입장을 바꿔 위헌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법원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각급 법원 경계지점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법원 인근 집회라 할지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원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재판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입법자로서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원 인근의 집회·시위가 허용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만 법원의 독립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는 여전히 금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하며 개정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집시법 해당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생활비 없어 과거 일하던 정육점서 삼겹살 수천만원 어치 훔쳐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거 일하던 정육점에 몰래 들어가 삼겹살 수천만원 어치를 훔친 20대가 경찰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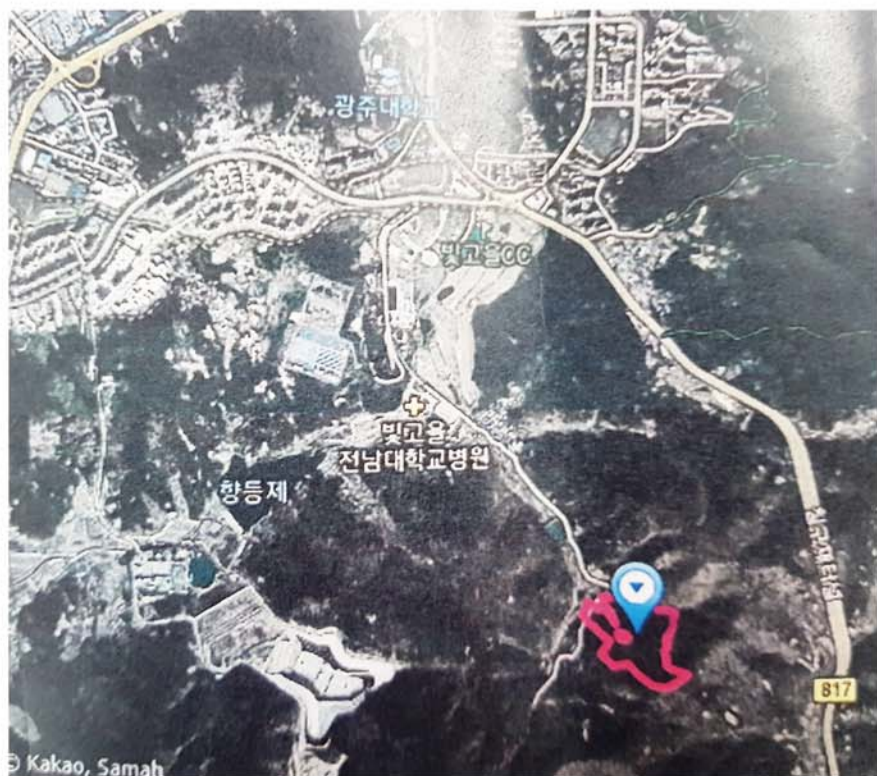
○...30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에 따르면 A(27)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2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정육점 고기창고에 들어가 225만원 상당 냉동 삼겹살을 몰래 가져가는 등 8차례에 걸쳐 1446

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훔쳐 다른 정육점에 팔았다는 것.

○...삼겹살이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안 업주 B(44)씨는 창고 주변 CC-TV를 보고 예전 직원이었던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는데,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해 돼지고기를 훔쳤다"며 선처를 호소.

/박기섭 기자 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